당 진 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162호 2018. 02. 28.(수)

고 시

◦ 제2017-43호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제2017-339호 도로의 노선지정 (변경)에 관한 공고 ········ 4
◦ 제2017-362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당진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 ········ 5
◦ 제2017-364호 당진시 개발 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 7
◦ 제2017-393호 당진 읍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 17

회 람						

발행 **당 진 시** (편집 홍보정보담당관 ☎ 350-3144)

당진시 고시 제2018-4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변경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 26.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5603 외 17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변경)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35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26.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02/26>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채운동 959-10, 943-9	서해로 5603 (채운동)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서해로 가는 도로
2	순성면 봉소리 1130-5, 1130-8	순성면 구절로 80-17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순성면의 명산 구절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순성면 봉소리 1130-11, 1130-15	순성면 구절로 80-18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순성면의 명산 구절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송산면 송석리 329-1	송산면 당산1로 480-3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당미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5	송산면 송석리 329-1	송산면 당산1로 480-5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당미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송산면 송석리 329-1	송산면 당산1로 480-7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당미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정미면 덕삼리 260-1	정미면 염솔로 159-40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염솔천의 명칭 활용
8	합덕읍 석우리 689-58	합덕읍 합덕대덕로 381-4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합덕대덕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송악읍 가학리 475-36	송악읍 송악로 69-33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송악면을 지나는 도로
10	송악읍 가학리 475-35	송악읍 송악로 69-35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송악면을 지나는 도로
11	구룡동 403-2	도동길 5-31 (구룡동)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도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신평면 남산리 807	신평면 만동포1길 134-20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만동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3	면천면 성상리 586-34	면천면 몽산길 120-32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몽산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4	송산면 가곡리 386-23	송산면 무수들길 342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무수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5	순성면 갈산리 585-5	순성면 산곡길 29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갈산리와 시곡리 명칭 활용
16	송산면 유곡리 350	송산면 작은별들길 79-20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작은별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7	순성면 봉소리 916-1	순성면 주동길 37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주동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8	송악읍 석포리 126-1	송악읍 담안길 91	2018-02-2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 명칭인 담안마을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순성면 양유리 564	순성면 가재골길 36-85	2012-01-01	단순변경(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자연마을 명칭인 가재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우강면 대포리 121-2	우강면 평야7로 156-12	2012-01-01	단순변경(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합덕과 우강의 곡창지대 활용
	우강먄 대포리 28-3	우강면 대포길 25	2012-01-01	단순변경(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법정리 명칭 활용
	송산면 동곡리 50-2	장재길 2-6	2012-01-01	단순변경(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자연마을 명칭인 장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 페이지

< 도로명주소 변경 내역 02/26 >

1	지번주소(토지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변경사유	비 고
	지번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1	송악읍 기지시리 311-1	기지시1길 35	기지시1길 35-4	일부건물 도로명주소 분할	

공고 제2018-339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당진시장 [인]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송산	리도	삼명선	송산 202호	송산면 명산리 179-2	송산면 도문리 62-4	0.90	-	8.0	6.5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 노선지정도(1/1200 지적도) 및 설계도서는 당진시청 도로과에 비치함.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당진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

당진시 공고 제 2018 - 362 호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당진 종합운동장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 월 22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장인)

1. 사 업 명 : 당진 종합운동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체육육성과)
3. 사 업 기 간 : 2018. 1. ~ 2020. 12.
4. 사 업 규 모 : 당진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조성 (A= 82,409㎡)
   가. 토 지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240-1번지 일원 (편입토지내역 : 별지 첨부)
   나. 보상계획 공고 통지된 토지에 착오·누락 등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 후 정정하고 본 공사의 세부조성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편입면적 변경 및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면적과 편입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누락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정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참조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 2018. 2. 22. - 2018. 3. 8.(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당진시청 체육육성과 체육정책팀(☎041-350-3862)
   다. 열람내용 : 편입 토지는 체육육성과 사무실 비치
   라. 이의신청 방법 :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등은 열람 장소에서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7.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진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8.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액 산정(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9. 보상금 지급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실시.

- 토 지 :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당진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물 건 : 물건은 권리관계 확인 후 실소유주에게 지급

※ 단 토지 및 물건(주택)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

10.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11. 기타 사항 :

- 토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시 체육육성과 체육정책팀에 오셔서 토지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시면 토지 및 물건 조서대로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손실보상 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041-350-3862, FAX 041-350-3879) 체육육성과 체육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고 제2018-364호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안 제19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지침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 허가과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전 화: 041-350-4486 팩스번호: 041-350-4459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정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본 지침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호 ~ 제7호, 안 제12조 ~ 제14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결과 :

당진시 예규 제 호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삭 제>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삭 제>
5.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삭 제>
6.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삭 제>

7. "휴게음식점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15호의 숙박시설(3층 이하로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삭 제>	
제12조(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기준)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및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삭 제>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며, 담장은 벽화 또는 당진시 로고 등으로 단장하여야 한다. ⑥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3조(발전시설 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	<삭 제>

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이 떨어져야 함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지역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중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 대상 건축물의 외벽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당진시 공고 제2018 - 393호

당진 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당진시 채운동 산122-3번지 일원 **「당진 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8.

당 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의 개요

- ㅇ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산122-3번지 일원
- ㅇ 면 적: 62,980㎡
- ㅇ 인구계획: 1,559명(663세대)
- ㅇ 사업기간: 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2020년 12월 예정)
- ㅇ 주거용지: 36,217㎡(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
- ㅇ 공공시설용지: 26,763㎡(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

- ㅇ 시 행 자: 화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진우
- ㅇ 사업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개발계획 수립(안)

4. 공람기간: 2018. 2. 28. - 2018. 3. 14.(14일간)

5. 공람장소: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2팀(☎350-4441), 당진2동사무소(☎360-8655)

6. 의견제출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및 당진2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본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